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663

발의연월일: 2023. 8. 4.

발 의 자: 강득구 · 민병덕 · 최혜영

이원욱 • 이개호 • 이용빈

고영인 · 허종식 · 김남국

서삼석 • 도종환 • 최강욱

전해철 · 강민정 · 김영호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으로 학교의 장과 교원의 학생생활 지도권한을 명시함으로써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의 명시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음.

이러한 법률 개정의 취지는 학생 또는 학부모로부터의 교권 침해를 방지하고 교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으로, 「유 아교육법」에도 동일한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원장과 교원은 법령과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를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바람직한 유아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3(원장 및 교원의 유아생활지도) 원장과 교원은 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21조의3(원장 및 교원의 유아
	생활지도) 원장과 교원은 유아
	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
	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법령과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를 지도
	<u>할 수 있다.</u>